

# 대구광역시달서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

2025. 10. 23.  
복지문화위원회

## 1. 심사경과

- 안 건 명: 대구광역시달서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- 발 의 자: 고명욱 의원 등 6명
- 발의일자: 2025. 10. 2.(목)
- 회부일자: 2025. 10. 10.(금)
- 상정 및 의결: 제315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문화위원회(2025. 10. 23.)

## 2. 제정이유

- 체육시설 이용 시 구 직장운동경기부 선수 등에 대한 사용료 감면 근거를 명확히 함으로써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고, 동시에 구민의 건강 증진과 생활체육 참여 확대를 도모하며, 직장운동경기부의 전국대회 등 성과를 통해 지역 이미지 제고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.

## 3. 주요내용

- 가. 달서구 직장운동경기부 선수 훈련 시 체육시설 사용료 전액 면제 항목 신설 (안 별표 4)
- 나. 그 밖에 체육진흥을 위하여 구청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설 (안 별표 4)

## 4. 관련근거

가. 관계법령

- 「체육시설의 설치·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6조
- 「체육시설의 설치·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4조의2

나. 비용추계 : 비대상

## 5. 전문위원 검토의견 요지

- 본 개정조례안은 「체육시설의 설치·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6조제3항에 따라 구에서 설치·운영하는 체육시설의 사용료 감면 규정과 관련, 우리구 직장 운동경기부 선수 훈련에 대한 사용료 감면 및 그 외 필요한 경우 감면할 수 있도록 추가로 규정하여 공공체육시설 효율적인 운영 및 생활체육을 활성화 하기 위한 것으로, 조례 개정의 필요성은 충분하다고 판단되며 상위법령 위반 여부 등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됨.

## 6. 질의·답변 및 토론 요지: “특이사항 없음”

## 7. 심사결과: 원안가결